

부산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640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6401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149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김연정, 김제현, 임승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변론종결 2022. 7. 20.

판결선고 2022. 8. 3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149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8.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18. 8. 23. 접수 제45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의 ‘A’을 ‘피고’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B이 B의 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2022. 6. 10.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1999. 1. 9. 사망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피고, B, E, F이 2018.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B이 2022. 6. 10.

부산가정법원(2022느단1311)에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늦어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18. 8. 23.경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B의 상속포기신고는 기간을 도과하였다.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2호), B의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명, 판사 정일예, 판사 서호원

별지